

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지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

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지사에서 전력산업에 기여할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※ 한국전력공사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화하고,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3일
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

1.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채용형태	직 무	세부직무	인 원
기간제 근로자 (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)	배전	배전선로 순시 (순시 적출 및 제거)	1명

2. 근무조건

계약기간	임금단가	근무장소	근무형태
'18.11.14 ~ '19.3.29	88,400원/일	한전 기장지사 (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청강로 24)	전일제 일근 근무 (09:00 ~ 18:00, 주5일)

3. 지원자격

구 분	주요내용
필수자격	· 제한없음
학 력	· 제한없음
성별/연령	· 제한없음
병 역	·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외국어	· 제한없음
채용대상제외자	·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[불임]에 해당하는자 · 채용대상 제외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

4. 직무기술서 및 우대사항

직무	직무기술서	우대사항
배전전기원 업무보조	1. 배전선로 순시업무(조류동지 적출) 2. 수목전지(닝쿨제거 등) 관련 업무 3. 배전운영실 창고 관리 등 업무 보조	1. 배전가능자격증 취득자(가공배전 또는 지중배전) 2. 한전 업무 유경험자 ※ 입사 지원서 접수일 기준

※ 직무 및 자격증 관련 문의 : 기장지사 류다예 (051-720-3273)

5. 전형일정

단계별 내용	일 정	비 고
지원서 접수	'18.10.23 ~ '18.11.07	한국전력공사 인력채용사이트 (http://recruit.kepco.co.kr/sangsi)
1차 전형 합격자발표 [서류전형]	'18.11.08	개별통보 / 5배수 (합격자에 한함, SMS통보)
2차 전형 [면접]	'18.11.12	면접장소 : 한전 기장지사 (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청강로 24)
2차 전형 합격자 발표	'18.11.13	개별통보 / 1배수
근무 시작일	'18.11.14	근무장소 : 한전 기장지사 (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청강로 24)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. 채용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시 주의사항

- [기본정보 작성화면] 근무희망지역1,2 : [부산광역시] [기장군] [기장읍] 선택

7. 기타사항

-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- 전형과 관련된 안내사항 및 전형결과는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
-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등은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.
-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.
-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2차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)을 지참해야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 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2차전형 합격자의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예비합격자(2차전형 차순위자순)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
※ 예비합격자는 2차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안내

8. 문의사항

- 채용 관련 :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 김래현 (☎051-604-5372)
- 직무 및 자격증 관련 : 기장지사 전력공급부 류다예 (☎051-720-3273)

신규채용자의 결격 사유

(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